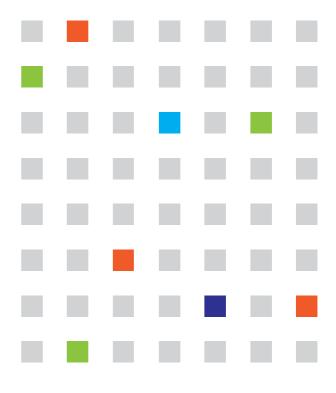


# 2022년 8월 AML REPORT

- 1. 자금세탁방지 동향
- 2. 자금세탁방지(AML) 제도 -고객확인의무



본 자료는 당행 자금세탁방지부에서 임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외부 유출을 금합니다.

# 자금세탁방지(AML) 동향

#### '수상한' 외환거래 7조 육박-코인 환치기-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(1)

- □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이상 외환송금 거래 관련하여 신한, 우리은행을 대 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.
- □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 는데,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,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 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.
- □ 금감원은 "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**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**"이라고 강조했다.
- ⇒ 시사Point : 금융기관의 외환송금 관련 엄격한 주의의무 이행 필요!!

#### 

- □ 올 들어 북한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조직에서 믹서\*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.
- \* 믹서 : 코인을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, 믹서를 반복 하면 코인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짐. 텀블러라고도 불림
- □ 2분기 코인을 활용한 불법자금의 80% 가까이가 북한과 관련이 있으며, 북한 해커들은 디파이(탈중앙화 금융)에서만 10억달러(약 1조3000억원) 가치의 **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**되고.
- □ 믹서로 이동한 가상자산(총 1조5백억원) 중 77%가 북한과 관련된 코인 서비스 그룹(라자루스\*, 블렌더\*\*)의 자금이라고 함
- \* 라자루스 그룹 : 북한 정부를 대신해 가상자산 해킹을 담당하는 사이버 범죄조직
- \*\* 블렌더 그룹 : 북한 관련 조직들이 훔친 금액을 세탁하는 역할의 범죄조직
- □ 한편, 美OFAC은 지난 5월 블랜더를 제재한 데 이어 북한이 탈취한 코인의 세탁을 도운 '믹서'기업인 토네이도 캐시도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.
- ⇒ 시사Point : 가상자산 송금 기술인 '믹서' 흐름 추적 어려워 악용 우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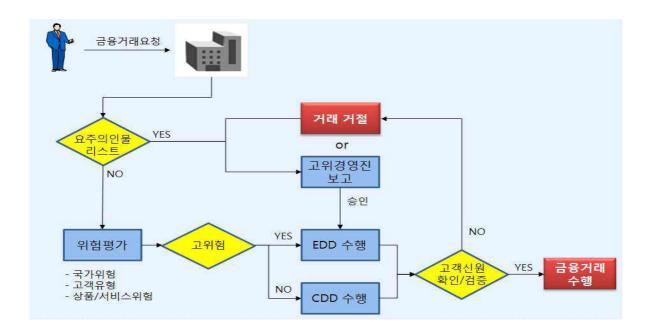
### (3) 한미, 北 가상화폐·자금세탁 감시 협력 강화

- □ 대통령 안보실은 방한 중인 美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을 만나 <mark>북한의</mark>
  사이버 범죄와 자금세탁 감시, 가상화폐 보안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- □ 특히, 美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은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의 1/3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며,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한국 측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
  - ※ (참고) 미 국무부는 지난 27일 미국 주요 기반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북한 해커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기존보다 두 배 올린 최대 1,000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
- → 시사Point : 북한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추세

## (4) 지금세탁 의심가대 보고 연한 심호자축銀 기관경고 및 교태로 부과

- □ 삼호저축은행이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과 임직원 횡령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음
- □ 임원 1명은 문책경고를 받았고, 일부 직원도 면직·감봉 등의 제재를 받았음
- □ 2016년 8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136억9100만원 상당의 거래 61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.
- ⇒ 시사Point : 금융기관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미이행은 과태료 부과 대상!

### (1) 고객확인업무 절차 및 관련 법규



#### [참고]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#### 제5조의2(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)

-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현 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(注意)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.
- 1.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.....
-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
- 나.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(실제소유자)에 관한 사항
- 2.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:
- 가. 1호 각 목의 사항
- 나.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 원장이 정하는 사항
- 3.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:

가. ~ 마. (생략)

#### 계좌 신규 개설

-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
- (예) 보험/공제계약, 대출/보증/팩토링 계약 양도성예금증서, 표지어음발행 펀드신규 가입, 대여금고 약정

#### 일회성 금융거래

- ①전신송금: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. ③외화표시 외국환거래: 10,000달러 ④기타: 1,000만원 ■ 7일 동안의 동일명의인으로 이루어진 거래
- (예) 무통장입금(송금), 외화송금 및 환전 자기앞수표의 발행, 보호예수, 선불카드 매매

실제 거래자여부 의심 등 자금세탁우려 고객

# (2) 고객확인 및 검증사항

## ※ (FIU)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

- □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금융회사 등이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확인(Identify)하는 과정과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·자료·정보 등을 통해 검증(Verification) 하는 과정
- ⇒ 금융회사등은 소정의 양식(고객확인서 등)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 거나 고객과의 문답 등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고객확인을 이행할 수 있으며,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 내규나 지침 등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함

# ● 고객확인 및 검증사항

(영 §10의4, 업무규정 §37~44)

		(개인고객, 대리인포함)	(법인고객)
일반 적인 위험	(CDD) 검증	■ 성명 ■ 생년월일 및 성별 (외국인비거주자) ■ 실명번호 ■ 국적 (외국인) ■ 주소 및 연락처 (외국인비거주자는 실제 거소/연락처)	<ul> <li>법인(단체)명</li> <li>실명번호</li> <li>본점 및 사업장 주소, 소재지 (외국법인:연락기능한실제사업장)</li> <li>대표자정보 (성명, 생년월일, 국적)</li> <li>업종(영리법인), 회사연락처</li> <li>설립목적(비영리법인)</li> </ul>
고위험	(EDD) 비검증 추가 정보확인		■ 법인구분(대/중소기업등) 상장정보(거래소,코스닥) 사업체설립일 홈페이지(이메일)등정보 ■ 거래자금의 원전 ■ 거래의 목적 ■ 필요시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,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등